

대구지방법원 2017. 8. 23 선고 2016가단2803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7. 7. 19

판 결선고 2017. 8. 2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I, 영천시 C 답 62㎡ 지상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6. 3. 15. 영천시 C 답 62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수,취 득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영천시 D 대 506㎡의 소유자로,그 위에 제재소, 주택,창고 등의 건물을 지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,그 중 일부 가건물이 이 사건토지 전체를 침범하고 있다(별지도면 참조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으로부터 위 인접토지와 지상 건물(이 사건 토지 지상 부 분 포함)을 매수하여 E의 점유를 승계하였고, E이 그 건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6. 5. 22.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,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 전 소유자와 공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불능으로 만들기 위해 이를 매수하였으므로,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.

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(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56495판결 등),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전 소유자와 공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를 매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최정인